

開會辭－基調演說에 갈음하여－

금년은 우리가 光復을 맞이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눈부신 成果를 거두고 있습니다. 法學의 분야도 마찬가지임은 물론입니다. 韓國法學의 경우 지난 50년간 物量의 면에서는 7,700종 이상의 理論的 體系書가 출간되고, 110,000편 가량의 法律關聯論文이 발표되었으며, 翻譯物 또한 280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¹⁾ 人的 면에서도 3,000명 이상의 法學者들이 법학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여 80,000여 명에 달하는 法學徒를 양성·배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여 개의 法學關聯 學會가 연구발표와 공동연구 등 활발한 학술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법학자들이 英·美·獨·佛·日 등에 유학하여 外國法學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人的·物的 成果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50년간 韓國法學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온 主題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어떠한 不可分性 내지 必然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외국에서의 법학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법학이 어떠한 特殊性을 가지는 것인지, 또 그 問題意識이나 方法論이 정확한 세계사적 인식에 바탕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地球村時代와 情報化社會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의 모습이 향후 21세기에는 더욱 변화·발전될 것이어서, 장차 韓國法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면서 21세기에 있어서 한국법학이 지향해야 할 目標과 課題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를 점점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가 光復 50周年을 기념하여 「韓國法學 50年の 成果와 21世紀적 課題」라는 주제를 내걸고 학술대회를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問題意識과 學問的 使命感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法學徒들은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韓國法學이 축적해 온 光復後 50년간의 成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한국법학의 特殊性과 問題點을 재검토 해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에 있어서 한국법학의 目標과 課題를 정립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주제에 비하여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主題發表와 指定討論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主催者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韓國法學 50年の 成果와 21세기

(1) 이 수치는 서울大學校 法學圖書館 編, 法律文獻索引 (I), (II), (III) 1945-1992, 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1990, 1995 등에 수록된 자료를 기초로 대략 추산한 것이다.

적 問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법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지 못하고 民事法學·憲法學·勞動法學·行政法學·刑事法學의 다섯 분야에 한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외의 國際法學·商法學·法制史學·訴訟法學 등은 日程과 저희 法學研究所의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다음 기획에 미루도록 하고,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득이 위의 다섯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법학의 時代區分이나 歷史區分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法學研究所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50년, 그러니까 光復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韓國法學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檢證해 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법학의 時代區分을 50년으로 하느냐 100년으로 하느냐 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별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번 학술대회를 계획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法學教授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저희 法學研究所의 기본적인 구상은 대체로 60세 전후되시는 원로 교수님을 司會者로 모시고, 主題發表者로는 50세 전후의 중견 교수님을 모시며, 指定討論者는 50대·40대·30대를 골고루 대표하는 교수님들을 모시려고 하였지만, 그것마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4개 大學의 교수님들만이 참여하시게 되었고, 主題發表나 討論過程에서도 世代配分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主題發表와 관련하여 저희 法學研究所는 主題發表者와 指定討論者에게 사전에 3가지 強調點을 論點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논의가 散漫해지는 것을 피하고 또 각 분야간 均衡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논점으로는 光復後 50년간 각 法學分野에서의 成果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에 집적된 각 분야의 수많은 學問的 成果 중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肯定的 성격의 成果는 무엇이었으며, 또 무의미하거나 否定的인 성격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논점은 각 분야에서 50년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온 問題領域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주로 의존해 온 方法論을 중심으로 해서, 그 特殊性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또한 問題點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명백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감히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秩序에 관해서 共同體 成員들이 合意한 내용이 바로 法의 형태로 形상화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所產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역으로 그 공동체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現實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準則의 역할

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난 50년 동안 우리 法學界의 關心領域에 관한 특수성은 法解釋學이나 立法論議에 치우쳐 法政策學의 研究나 論議가 외면 또는 경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들 뿐 아니라, 方法論에 있어서도 外國法學이나 法制度의 단순한 소개작업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比較法學的 方法論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制度論的 接近法에 치중되고 機能論的 接近法을 활성화하지 못한 인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韓國法學에 고유한 獨自의 方法論의 구축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난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에 대한 지적과 반응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세번째 논점은 21세기에 있어서 韓國法學의 目標와 課題는 무엇이 되겠는가 또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점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世界化와 더불어 人類共存을 위하여 현재의 國家的 社會的 生活樣式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世界化가 심화될 경우 각국의 法體系도 個別國家次元의 법체계에서 世界的 次元의 법체계로 대체되거나 양자가 병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法學의 각 분야도 國際民法學과 個別國家民法學, 국제헌법학과 개별국가헌법학, 국제노동법학과 개별국가노동법학, 국제행정법학과 개별국가행정법학, 국제형법학과 개별국가형법학 등의 분야로 分化되어 再構成될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고, 또 國民共生主義와 人類共存主義의 실현을 위하여 公法的 規制領域이 보다 더 확대됨으로써 公法과 私法의 구분체계가 애매해지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영역까지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의 學術大會는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韓國法學의 成果와 課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主題發表를 준비해 주시고 指定討論과 司會를 맡아 주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傍聽客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基調演說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995년 6월 28일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長

權 寧 星